

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년 1월 31일

도시·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월 16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도시·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1.31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)

□ 제안이유

- 기존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”¹⁾를
구청장직속(공동위원장 구성) 민·관합동 추진위원회로 개정하여
추진위원회 역할 및 민·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

1)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(32명)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 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제7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, 한국공항공사·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
2.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의 전·현직 대학교 교수 이상
3. 항공, 도시계획 관련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

□ 주요내용

가.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6조)

-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” →
“서울특별시 강서구 민·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”

나.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3. 12. 6.~12. 26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개선사항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개정 취지

- 기존 추진위원회를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인 민·관합동 추진위원회로 개정하여 위원회 역할 및 민·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나. 주요 개정내용

○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6조)

-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” →
“서울특별시 강서구 민·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”

○ 위원회 구성 및 임기(안 제7조)

-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은
구청장,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
※ 기존 추진위원회 위원장 1명(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)

다. 종합 의견

-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 그치지 말고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
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·관 협력을 토대로 항공학적
검토제도 시행 등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고, 국제민간
항공기구(ICAO) 국제기준 개정 촉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참고자료 및 관계 법령 1부.

참 고

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현황

□ 추진배경

- 1950년대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장기간 제약
- 고도제한으로 재건축·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도시 노후화 야기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공항 고도제한 완화 시까지
- 사업내용: 민·관 협력을 통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
- 소요예산: 12,400천원(구비, 24년 기준) ('23년 명사이월 31,000천원)

※ 고도제한 현황: 강서구 면적의 97.3%(40.3km²)

구 분	면적 비율(면적)	높 이	반 경	비 고
수평표면	64.7%(26.1km ²)	해발 57.86m	4km	
원추표면	21.1%(8.5km ²)	해발 57.86m~112.86m	1.1km	
기타표면	14.2%(5.7km ²)	-	-	기본·전이·진입표면

□ 추진경과

- 2012.~2014.: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실시(강서, 양천, 부천)
- 2014. 1.~ 2.: 고도제한 완화 30만 주민서명운동 추진(서명: 339,561명)
- 2015.~2017.: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(3회)
- 2015. 6. 22.: 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련 항공법 개정
- 2016. 3. 30.: 공항시설법 제정(항공법 분법·폐지)
- 2018. 8. 21.: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(한국교통연구원)
- 2019. 11. 28.: 항공학적 검토제도 법률자문 및 주민설명회 개최
- 2022. 4.~10.: 국토교통부 관계관 등 면담 및 건의문 제출
- 2023. 4.~ 6.: 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주민서명 추진(서명: 66,305명)
- 2023. 6. 28.: 국토교통부 간담회 실시(국제기준 개정 초안 및 국토부 대응방안 청취)
- 2023. 9. 5.: 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국토교통부 방문
(강서·부천 추진위원회 공동 건의문 및 주민서명부 전달)
- 2023. 9. 14.: ICAO 국제기준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(강서구 → 국토교통부)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○ (문제점)

- 고도제한 완화 시행 관련 국토교통부 미온적 태도(법령에 규정된 항공학적 검토제도 미시행)
-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지연(2026년 → 2028년)

○ (대책) 민·관,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

□ 향후 계획

-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
- 민·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추진
-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국제기준 개정 촉구(국토교통부→ICAO)

※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주요내용

고도제한 표준안

現 장애물 제한표면(OLS) ⇒ 금지(OFS)·평가(OES)표면으로 이원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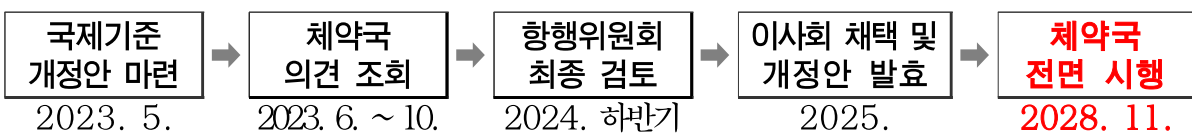
- OFS(Obstacle Free Surface):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장애물 침투를 엄격히 제한
- OES(Obstacle Evaluation Surface): 비행절차 등을 고려하여 장애물 침투를 유연하게 적용
- * 평가표면(OES)의 경우 각 회원국이 항공기 성능 등을 고려하여 축소·조정 가능

항공학적 검토

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제시 (세부지침은 금번 未 포함)

-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있음 (근거: 공항시설법 제34조)

✓ 국제기준 개정 일정²⁾



2) 향후 항행위원회 검토, ICAO 이사회 등의 영향으로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.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